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
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신설 부처의 경력채용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경력채용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완화(안 제16조제2항)

특례운영기관에 한해, 초임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기관 신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전단 중 “달리”를 “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기관 신설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) ① (생략)	제16조(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<u>달리</u> 정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년 <u>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-----</u> ----- <u>. 다만, 기관 신설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9